

● 제314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157)

2022. 9. 20.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의안번호 157

I. 동의안 개요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자 : 2022년 8월 29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과 시립병원
의 지속적 혁신·발전을 위한 상시적 컨설팅,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의 싱
크탱크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3회계연도 서
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함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 「서울특별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및
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에 의거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여부
에 대해 시의회 사전 동의 필요

3.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출연금 교부)

나. 주요사업

-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분석, 중
합계획 수립의 지원
- 서울특별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 지원, 컨설팅 및 통계 구축
-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개발·보급
- 시립병원, 보건소 등 종사자 교육훈련
- 생애주기별, 성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발굴
- 국내·외 공공보건의료자원 연계·교류 및 민간 보건의료자원과 협력체계 구축
- 시립병원, 보건소,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공동사업 개발 및 운영
- 시장이 위탁하는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등

다. 출연의 필요성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업무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시민에게 양질
의 서비스 제공
-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정책 개발
-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보건의료자원 연계·협력을 통한 서울형
보건의료체계 구축 등

라.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3년 예산(안) : 5,872,558천원

○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연 번	세부내역	2023년 예산 (안)	비 고
합 계		5,872,558	
1	인 건 비	3,422,001	
2	운 영 비	2,450,557	
3	사 업 비	-	

※ '23년도 사업비는 전년도 사업비 수준(1,430백만원)으로 '22년도 잉여금(추정치 1,690백만원) 활용 편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3 (출자·출연의 동의) 및 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제22조의3 (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의4 (출자·출연 동의안)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출연 사무명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출연 사무 내용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이사회 회의록
7. 결산 보고서
8.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나. 예산조치 :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금 반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붙임 2022년도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금 감사보고서 1부. 끝.

※ 작성자 :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정책팀 이진성 (☎ 2133-7509)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1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공공보건의료재단’이라 함)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¹⁾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²⁾에 의거 사전절차로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출연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2 공공보건의료재단 현황

가. 설립 목적 관련

-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시민의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수립의 지원과 서울특별시립병원, 보건소 및 지역사회 의료자원의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³⁾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수립의 지원과 서울특별시립병원, 보건소 및 지역사회 의료자원의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거 2017년에 설립되었으며, 이 조례 제4조에서는 공공보건 의료재단의 사업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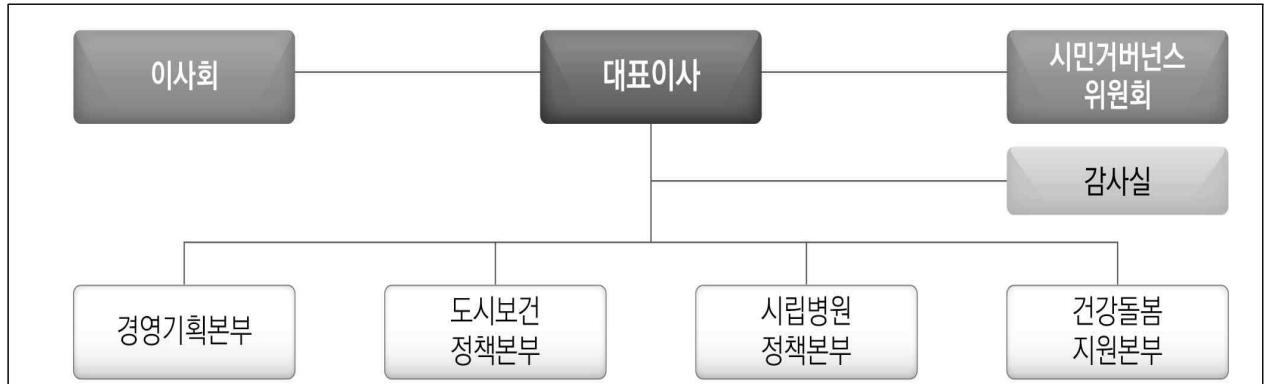
〈표-1〉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사업 범위

1.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분석, 종합계획 수립의 지원
2. 서울특별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 지원, 컨설팅 및 통계 구축
3.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개발·보급
4. 시립병원, 보건소 등 종사자 교육 훈련
5. 생애주기별, 성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발굴
6. 국내·외 공공보건의료자원 연계·교류 및 민간 보건의료자원과 협력체계 구축
7. 시립병원, 보건소,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공동사업 개발 및 운영
8. 시장이 위탁하는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나. 조직 및 인력 관련

- 공공보건의료재단은 4본부(경영기획본부, 도시보건정책본부, 시립병원정책본부, 건강돌봄지원본부)와 1실(감사실)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53명이며 현원은 52명임(2022년 7월 1일 기준).

〈표-2〉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조직



〈표-3〉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인력

(단위 : 명, '22.7.1.기준)

구 분	계	대표이사	1급	2급	3급	4급	5급
정 원	53	1	4	6	11	16	15
현 원	52	1	2	5	12	18	14

다. 부서별 주요 업무

- 공공보건의료재단의 부서별 주요 업무를 보면, 도시보건정책본부는 공공의료 정책연구 및 보건의료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시립병원정책본부는 시립병원 전문지원 등에 관한 사항, 건강돌봄지원본부는 보건의료분야 전달체계 확대 등에 관한 사항, 경영기획본부의 경우, 중장기 전략기획 및 예산편성 등 행정적인 부분을 관리하고 있음.

〈표-4〉 공공보건의료재단 부서별 주요 업무

부서명	주요업무
도시보건정책본부	○ 건강정책수립을 위한 공공의료 정책연구, 근거기반 고도화 등에 관한 사항 ○ 보건의료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평가·모니터링·확산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시립병원,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인력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시립병원정책본부	○ 시립병원 운영관리 및 정책에 대한 전문적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시립병원 성과평가 및 컨설팅·경영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시립병원 인사·노무 및 의료기기 등 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 시립병원 이용경험 향상 서비스디자인 및 시설·건축에 관한 사항
건강돌봄지원본부	○ 보건의료 거버넌스 플랫폼 및 지역사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국내외 공공 및 민간보건의료 자원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 보건의료분야 전달체계 확대 및 시민참여 구조화·활성화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중심 사업 개발 및 보급·지원에 관한 사항
경영기획본부	○ 중장기 전략기획, 경영평가,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조직·인사·노무·복무·직원평가·후생복지·교육·급여에 관한 사항 ○ 자금 및 기금 운용, 예산집행 및 결산,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자료: 공공보건의료재단 주요업무 보고(2022. 7.) 제311회 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라. 예산 현황

- 2022년 공공보건의료재단 예산은 83억 1200만원(인건비 32억 6000만원, 운영비 24억 3600만원, 사업비 15억 5000만원, 예비비 10억 6600만원)으로 2021년 66억 8200만원 대비 증가(24.4%)하였습니다.
- 2023년 공공보건의료재단 예산(안)은 58억 7300만원(인건비 34억 2200만원, 운영비 24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는데, '22년도 잉여금(추정치 16억 9000만원)을 활용하여 '23년도 사업비를 전년도 사업비 수준(사업비 14억 3000만원)으로 편성할 예정이므로, 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여짐(예비비 제외).

〈표-5〉 공공보건의료재단 예산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1년	증 감	
				(%)
계	8,312	6,682	1,630	24.4
인 건 비	3,260	3,058	202	7
운 영 비	2,436	2,269	167	7
사 업 비	1,550	1,330	220	17
예 비 비	1,066	25	1,041	4,164

마. 주요성과

-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지난 추진 성과를 보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서울형 유급병가⁴⁾’, ‘환자안심병원⁵⁾’ 등 선도적인 건강정책의 개발과 정착에 공헌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서울시 건강정책 종합 계획(지역보건의료계획,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원 및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의 주요과제 개발 및 실행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⁶⁾.

이는 시민의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설립 및 운영 목적⁷⁾과 부합

4) 자료: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2022. 2.)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지원단) 10년 발간사. p35.

- 아프면 쉴 수 있는 서울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파도 유급병가가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질병을 키우게 되는 근로취약계층 가운데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들에게 입원이나 검진 등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연간 최대 14일까지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임.

5) 자료: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2022. 2.)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지원단) 10년 발간사. p89.

-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은 별도의 보호자나 사설 간병인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 팀이 되어 환자를 돌보는 간호·간병 서비스로 전국 최초로 시립병원에 도입하여 운영해왔으며, 2015년부터는 전국사업으로 발전함.

6) 자료: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2022. 2.)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지원단) 10년 발간사. p84.

하는 것으로 보여짐.

3 출연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지방재정법」 제18조⁸⁾에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⁹⁾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공보건의료법」 제22조¹⁰⁾에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

-
- 7)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수립의 지원과 서울특별시립병원, 보건소 및 지역사회 의료자원의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8)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9)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10) 「공공보건의료법」 제22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적 지원을 국가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임.

- 「지방재정법」 제18조¹¹⁾ 및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¹²⁾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출연은 법령과 우리 시 조례에 출연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출연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종합의견

-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대한 출연은 법령과 우리 시 조례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공공보건의료법」 제3조제4항¹³⁾에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문 의 처

우현재 입법조사관 (02-2180-8155)

1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2)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출연금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3) 「공공보건의료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 ③ <중략>.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